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- 삼성클래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채권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 17

3. 정정 사유
- 전환형 연결펀드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
4.정정요구·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 (정의)	5. “ 전환” 이라 함은 __ 있다. 나. **삼성 클래식인덱스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**	5. “ 전환” 이라 함은 __ 있다. 나. **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**
제6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②신탁업자는__감시업무, **(추가)**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	②신탁업자는__감시업무, **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**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	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
제7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**집합투자업자・신탁업자・판매회사가 법령・신탁계약・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**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	**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**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8조 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 )원으로 하고, 설정할 수 있는 **(추 가)**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 수익증권" 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 )원으로 하고, 설정할 수 있는 **수종의**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 수익증권" 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제19조 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)	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대차대조표** 상에 계상된__계산하여 공고한다.	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**재무상태표** 상에 계상된__계산하여 공고한다.
제 36조(투자대상 등)	②**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1호에서 정한**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**채권**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**해당채권**의 즉각적인 처분이	②**제1항에서 정한**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**해당 자산**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**해당 자산**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	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제37조 (투자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__따라 투자·운용한다. **(추 가)** ②**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** 규정에 불구하고__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**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**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①집합투자업자는__따라 투자·운용한다. **9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.** ②**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 9호**의 규정에 불구하고__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**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제38조 (운용 제한)	①집합투자업자는__그러하지 아니하다. 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**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**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**7.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**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, 이 조 제1항제2호, 제4호,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	①집합투자업자는__그러하지 아니하다. 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투자신탁의 **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**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**(삭 제)**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, 이 조 제1항제2호,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**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	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**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
제40조 (투자신탁보수)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 보수계산기간" 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**대차대조표상**에 계상하고__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 보수계산기간" 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**재무상태표상**에 계상하고__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
제42조 (투자신탁의 해지)	**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**	**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(해지, 합병, 모자형 전환, 존속 등)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** **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**
제48조 (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**1. 대차대조표**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**1. 재무상태표**
제50조 (투자신탁의	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	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합병)	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	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부칙	**(추 가)**	**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. (전환형 연결펀드 명칭 변경,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)**